

# 2014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14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5. 5. 15~6. 3(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박종욱(총괄)
  - 검사위원 : 정대교(일반회계 세입)
  - 검사위원 : 고재용(일반회계 세출)
  - 검사위원 : 조상현(특별회계 세입·세출, 금고결산, 기금)
  - 검사위원 : 신종해(공유재산, 물품관리, 채권·채무)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 2014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 창 군 수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 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3일

대표감사위원	박 종 욱
감 사 위 원	신 종 해
감 사 위 원	조 상 현
감 사 위 원	정 대 교
감 사 위 원	고 재 용

2014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4
2) 세출	5
2. 일반회계	
1) 세입	6
2) 세출	6
3. 특별회계	
1) 세입	7
2) 세출	8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9
2) 채권	9
3) 채무	10
4) 공유재산	10
5) 물품	11
5. 세입·세출외현금	11
6. 검사결과	12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3

# 2014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14년도의 일반회계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세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 월 액
전 년 도 (2013)	431,030,232,630	441,219,114,848	432,915,200,093	2,041,889,446	6,262,025,309
당해년도 (2014)	439,665,399,398	460,721,001,962	452,468,197,776	1,326,808,930	6,925,995,256

#### 가. 세입결산 개요

- 2014년도 실제수납액은 452,468,197,776원으로 예산현액의 10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로 나타남.

※ 2013년도

- 실제수납액 : 432,915,200,093원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98%)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자금없는이월)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13)	389,582,015,000	41,448,217,630	431,030,232,630	353,598,978,081
당해연도(2014)	376,740,820,000	62,924,579,398	439,665,399,398	369,564,800,512
익년도 이월액 (자금없는이월)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2,924,579,398 (771,840,750)	14,506,675,151	79,316,222,012	1,908,641,889	15,254,841,475
50,486,250,757 (100,000,000)	19,614,348,129	82,903,397,264	1,855,977,855	30,661,168,652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376,740,820,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62,924,579,398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9,665,399,398원임.
- 지출액은 369,564,800,512원으로 예산현액의 84%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㉑)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대비율
		계(㉒)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2013)	431,030,232,630	62,924,579,398 (771,840,750)	37,840,683,840 (771,840,750)	2,008,297,050	23,075,598,508	14.6%
당해연도 (2014)	439,665,399,398	50,486,250,757 (100,000,000)	18,883,992,316 (100,000,000)	4,241,888,391	27,260,370,050	11.5%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2. 일반회계 세입·세출

### 1) 세입

(단위 : 원)

구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년도 (2013)	352,367,407,930	361,003,552,644	354,029,429,719	2,014,427,386	4,959,695,539
당해연도 (2014)	348,606,600,198	366,998,047,367	360,487,439,061	1,326,808,930	5,183,799,376

####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360,487,439,061원으로 예산현액의 103%이고, 징수결정액은 366,998,047,367원으로 예산현액의 10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 2013년도

- 실제수납액 : 354,029,429,719원 (예산현액의 100%)
- 징수결정액 : 361,003,552,644원 (예산현액의 102%)

### 2) 세출

(단위 : 원)

연도별 구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13)	328,114,701,000	24,252,706,930	352,367,407,930	297,272,450,081
당해연도(2014)	305,248,283,000	43,358,317,198	348,606,600,198	307,780,399,564
<b>익년도이월액 (자금없는이월)</b>	<b>집행잔액</b>	<b>차인잔액</b>	<b>국도비집행잔액</b>	<b>순세계잉여금</b>
43,358,317,198 (771,840,750)	11,736,640,651	56,756,979,638	1,824,450,303	12,346,052,887
26,411,938,567 (100,000,000)	14,414,262,067	52,707,039,497	1,628,019,663	24,767,081,267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305,248,28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358,317,198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8,606,600,198원임.
- 이월사업비는 자금없는이월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26,411,938,567원으로 예산현액의 7.6%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현액 대 비 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13)	352,367,407,930	43,358,317,198 (771,840,750)	35,126,047,300 (771,840,750)	1,599,816,610	6,632,453,288	12.3%
당해년도 (2014)	348,606,600,198	26,411,938,567 (100,000,000)	17,370,336,806 (100,000,000)	3,645,154,391	5,396,447,370	7.6%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 월 액
전 년 도 (2013)	78,662,824,700	80,215,562,204	78,885,770,374	27,462,060	1,302,329,770
당해년도 (2014)	91,058,799,200	93,722,954,595	91,980,758,715	0	1,742,195,88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91,980,758,715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징수결정액은 93,722,954,595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2013년도

- 실제수납액 : 78,885,770,374원 (예산현액의 100%)
- 징수결정액 : 80,215,562,204원 (예산현액의 102%)



## 2) 세 출

(단위 : 원)

연도별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13)		61,467,314,000	17,195,510,700	78,662,824,700	56,326,528,000
당해년도(2014)		71,492,537,000	19,566,262,200	91,058,799,200	61,784,400,948
	익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9,566,262,200	2,770,034,500	22,559,242,374	84,191,586	2,908,788,588
	24,074,312,190	5,200,086,062	30,196,357,767	227,958,192	5,894,087,385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71,492,53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9,566,262,2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1,058,799,200원임.
- 이월사업비는 24,074,312,190원으로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구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현액 대 비 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13)		78,662,824,700	19,566,262,200	2,714,636,540	408,480,440	16,443,145,220	25%
당해년도 (2014)		91,058,799,200	24,074,312,190	1,613,655,510	596,734,000	21,863,922,680	27%

####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 1) 기금

(단위 : 원)

기금명	구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5,531,260,565	1,866,440,089	2,782,086,609	915,646,520	17,397,700,654
식품진흥기금		120,045,094	△7,533,663	27,829,807	35,363,470	112,511,431
체육진흥기금		2,648,944,220	572,403,550	572,403,550	0	3,221,347,770
통합관리기금		7,325,065,427	876,020,067	1,071,772,897	195,752,830	8,201,085,494
사회복지기금		4,531,341,762	378,398,935	466,498,935	88,100,000	4,909,740,697
재난관리기금		905,864,062	47,151,200	643,581,420	596,430,220	953,015,262

#####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서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15,531,260,565원 보다 1,866,440,089원이  
증가한 17,397,700,654원을 관리하고 있음.

##### 2) 채권

(단위 : 원)

회계별	구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065,650,134	71,378,729	375,060,056	5,761,968,807
일반회계		4,694,155,210	0	267,356,595	4,426,798,615
특별회계		475,226,450	246,970	13,055,620	462,417,800
기	금	896,268,474	71,131,759	94,647,841	872,752,392

#####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6,065,650,134원에서  
- 71,378,729원이 발생, 375,060,056원이 소멸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61,968,807원임.

### 3)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8,180,000,000	△809,000,000		809,000,000	0	17,371,000,000
일반회계	18,180,000,000	△809,000,000		809,000,000	0	17,371,000,00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 18,180,000,000원에서
- 발생액은 0원이며, 809,000,000원이 소멸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371,000,000원임.

###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용도별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감(Δ)
합	계	2,261,880,366,576	2,302,822,064,717	40,941,698,141
행정 재산	계	2,209,414,919,137	2,248,823,231,678	39,408,312,541
	공용 재산	150,442,236,610	186,609,320,982	36,167,084,372
	공공용재산	2,052,676,748,043	2,055,627,655,404	2,950,907,361
	기업용재산	6,295,934,484	6,563,554,292	267,619,808
	보존용재산	0	22,701,000	22,701,000
일 반 재 산		52,465,447,439	53,998,833,039	1,533,385,600

가.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전년도말 2,261,880,366,576원에서 40,941,698,141원이 증가한 2,302,822,064,717원으로

- 토지 127,834,692m<sup>2</sup> / 437,682,765,526원
- 건물 200,802m<sup>2</sup> / 306,804,453,214원
- 기타 1,488,981건 / 1,558,334,845,977원임.

## 5) 물 품

(단위 : 개,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 환,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31종	수량	490	58	386	444	13	29	42	892
	금액	3,664,003	1,108,195	2,819,171	3,927,366	168,531	64,753	233,284	7,358,085

가. 당해연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664,003,000원보다 3,694,082,000원이 증가한 7,358,085,000원임.

## 5. 세입 · 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1,901,217,432	△456,393,042	3,278,088,509	3,734,481,551	1,444,824,390
보 증 금	559,806,430	△125,312,540	277,486,690	402,799,230	434,493,890
보 관 금	1,094,387,547	△325,815,720	2,848,111,239	3,173,926,959	768,571,827
잡종금등기타	247,023,455	△5,264,782	152,490,580	157,755,362	241,758,673

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44,824,390원으로 전년도말 1,901,217,432보다 456,393,042원이 감소함.

※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금액임.

## 6. 검사결과

### □ 총 평

- 2014년도 일반회계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 군의 노력으로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4% 상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 일부 공무원들은 예산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됨

#### ○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 실제수납액은 360,487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6,99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세출예산액은 305,248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358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8,606백만원으로 지출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나타났음.

####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 세입결산액은 91,980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784백만원임.

#### ○ 세입세출외현금은

- 현재액 1,44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0%의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적기에 추진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에도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람.

#### ○ 아울러 금회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14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 지 적 (건의 · 수범사례)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 고
1	행정하자로 인한 민간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우발채무 발생 및 재정손실	
2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계획 수립	
3	예비비 지출 부적정	
4	집행잔액 과다사업에 대한 조치 미흡	
5	2014년 발직불금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6	평창·대화 통합 정수장 사업비 초과집행 결산 부적정	
7	예산의 전용 사용 과다	
8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9	기금 조성사업 활성화	
10	균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 철저	
11	청사 운영관리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 미흡	
12	읍·면 결산검사 제출자료 지정서식 사용	건의 1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수범사례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

○ 제 목 : 행정하자로 인한 민간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우발채무발생 및 재정손실

○ 문 제 점

- 공무원의 허위민원증명발급, 각종 인·허가시 관련 법령 착오적용 등 행정하자로 인한 민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2014년 1건 2,110,000천원의 우발채무가 소송 사건으로 계류중에 있고, 2014년 아스콘 인·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관련 부지매입비로 226,000천원의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 검사자 의견

- 향후 행정하자로 인한 민간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군의 재정손실을 초래할 경우 손해당사자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구상권을 청구하고 민원서류의 부정, 착오발급, 인허가 관련 법령 착오적용 등 행정하자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결재권자의 면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이 요구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2

○ 제 목 :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계획 수립

○ 현 황

-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자금융자에 목적을 둔 것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 설치되었고 2018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음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은 2010년 최초 예수·예탁시 2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이었으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사업에 따른 군비 투자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2014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균등상환하기로 의결된 바 있음.

## □ 감사자 의견

-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용자된 7,900,000천원에 대하여 조례상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2018년까지 이므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3

○ 제 목 : 예비비 지출 부적정

○ 현 황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규정하고 있는 바

## □ 감사자 의견

-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의 경우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362,700천원은 매년 연례 반복적인 예측가능한 경비로써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향후에는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4

○ 제 목 : 집행잔액 과다사업에 대한 조치 미흡

○ 현 황

- 붙임 : 집행잔액 과다사업 현황

○ 문 제 점

-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고 확정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목적의 달성하여야 함에도 기술지원과 외 6개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10개 사업에 2,944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사실임.

## □ 감사자 의견

-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을 통해 정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바람

### <별첨> 집행잔액 과다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잔액	부서명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10,201	600	30	9,571	2,944	
1	고령지채소 안정생산 (도비)	402-02	760			760	172	기술지원과
2	예쁜경관형성	401-01	2,332			2,332	85	도시주택과
3	헬프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	207-01	57			57	57	경제체육과
4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401-01	400	200		200	359	문화관광과
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1-10	1,037			1,037	138	경제체육과
6	자활근로사업	307-10	500	400	30	70	127	주민생활지원과
7	진료사업운영	307-01	630			630	117	보건의료원
8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307-09	1,545			1,545	314	도시주택과
9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	401-01	1,340			1,340	158	환경위생과
10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307-05	1,600			1,600	186	환경위생과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5
- 제 목 : 2014년 받 직불금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강원도 정산서	283,408	267,553	15,854	기술지원과
군 결산서	441,350	267,553	173,796	

## ○ 문 제 점

- 2014년 11월 12일 강원도 받 직불금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결과에 따라 정산한 283,408천원의 예산액으로 제3회(정리)추경에서 정리하고 집행 후 결산하여야 함에도
- 2014년 11월 13일 2015년 받 직불금 가내시 보조금 441,350천원 예산액으로 2014년 받 직불금 사업비 결산을 함으로써 결산서상의 집행잔액 173,796천원 중 157,942천원이 허수인 사실임

## □ 검사자 의견

- 추후에는 확정내시 보조금을 확인 후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6
- 제 목 : 평창·대화 통합정수장 사업비 초과집행 결산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실제 수납액	실제 지출액	이 월 금	잔액(순세계잉여금)
2014	32,869,233	23,743,754	9,746,368	△620,889

## ○ 문 제 점

- 국·도비로 추진하는 평창·대화 통합정수장 사업에 540,000천원이 2015년 4월 1일 착금되었음에도, 2013년 10월에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사유로 사업비 540,000천원을 초과지출하여 2014년 순세계잉여금 -620,889천원을 발생케 한 사실임

## □ 검사자 의견

- 향후 보조금 목적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목적사업에 보조금 전액이 착금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출하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7
- 제 목 : 예산의 전용 사용 과다
- 현 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 고
20	5,688,854	771,800	771,800	

※ 결산서 P305 참조

##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4년 결산결과를 보면, 19개 사업에 771,800천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 감사자 의견

-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세출 과목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8
- 제 목 : 민간 위탁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 현 황 :
  - 붙임 : 2014 민간위탁사업 내역
- 문 제 점

## □ 검사자 의견

- 민간 위탁사업이 21개 사업에 8,223,056천원으로서 위탁운영 목적과 이행이 협약서에 의하여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또한 기대효과 역시 극대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향후 민간 위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탁관리 사업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 <별첨> 2014 민간 위탁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 번	위탁 운영내역	예 산 액						부 서 명
		금액 (계)	국 비	기 금	분권 교부세	도 비	군 비	
	합 계	8,223,056	156,778	1,428,293	35,000	21,052	6,581,933	
1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100,000			35,000		65,000	주민생활지원과
2	효석문화마을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68,000					68,000	문화관광과
3	민물고기생태관·백룡동굴가이드 민간위탁금	550,000					550,000	문화관광과
4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도검사 위탁운영	44,000					44,000	도시주택과
5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위탁운영	45,188		22,594			22,594	보건의료원
6	방역소독 위탁운영	21,000					21,000	보건의료원
7	올림픽 퓨전요리반 위탁운영	18,000					18,000	농업기술센터
8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위탁운영	246,000					246,000	농업기술센터
9	이효석문학관 위탁운영	203,000					203,000	문화관광과
1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위탁운영	74,868		53,200		4,334	17,334	문화관광과
11	소각시설 위탁운영	1,600,000					1,600,000	환경위생과
12	대화·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2,330,000		650,683			1,679,317	환경위생과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2,200,000		701,816			1,498,184	환경위생과
14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	58,340	29,170			11,668	17,502	환경위생과
15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 서비스 개선사업	15,000					15,000	자치행정과
16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45,000					45,000	경제체육과
17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400,000					400,000	환경위생과
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운영	116,420	93,000			4,820	18,600	주민생활지원과
19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위탁운영	3,840	2,688			230	922	주민생활지원과
2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위탁운영	39,900	31,920				7,980	주민생활지원과
21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44,500					44,500	도시주택과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9
- 제 목 : 기금 조성사업 활성화
- 현 황

(단위 : 원)

연 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기금 운용		연도말 조성액	비 고
			수 입	지 출		
2014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2,648,945	572,317	0	3,221,262	
2013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2,083,849	565,067	0	2,648,916	

## □ 감사자 의견

-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는 바
-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만 조성하고 기금 사용 목적이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음.
- 최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은점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함이 미흡할 수 있고 조성된 기금이 사장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기금의 효율적이고 목적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됨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0
- 제 목 : 균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 철저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계	2014년	과년도	비 고
계	68,583,350	23,857,560	44,725,790	
평 창	6,110,350	2,734,710	3,375,640	
대 화	6,317,510	2,570,100	3,747,410	
봉 평	12,052,190	-	12,052,190	
진 부	6,960	6,960	-	
대관령	44,096,340	18,545,790	25,550,550	

## ○ 문 제 점

- 대부료는 재산 사용 수익자가 납세자임에도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는 누증되는 실정임. 대부 관계 검토 등 실질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 □ 검사자 의견

- 효율적 징수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1

○ 제 목 : 청사 운영관리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 미흡

○ 현 황

- 붙임 : 읍·면 청사 운영관리 집행 내역

○ 문 제 점

-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예산편성시 산출자료에 의한 정확한 예산산정이 가능함에도 방림면 외 4개면에서는 예년을 기준으로 과도한 예산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을 발생케 하였음.

## □ 검사자 의견

- 앞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은 추경등을 통해 정리하고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산정을 하기 바람.

(예 : 8개 읍·면 화목보일러임에도 유류비 계상)

<별첨> 읍·면 청사 운영관리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비 고
5개 읍·면	계	434,375,000	310,884,430	123,490,570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읍·면
방림면	청사운영관리 (201-02)	63,520,000	47,132,100	16,387,900	
봉평면	"	67,800,000	48,566,075	19,233,925	
용평면	"	78,560,000	65,049,655	13,510,345	
진부면	"	107,975,000	70,871,990	37,103,010	
대관령면	"	116,520,000	79,264,610	37,255,390	

# 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건의사항

- 관리번호 : 1
- 제 목 : 읍·면 결산검사 제출자료 지정서식 사용
- 현 황
  - 붙임 : 8개 읍·면 제출서류 목차, 내용 등 서식이 각각 상이

## □ 검사자 의견

- 결산검사 주무부서에서는 군 결산검사서 제출서류(안)에 준하는 지정 서식(안)을 읍·면에 시달하여
- 2015년 결산검사에는 읍·면 통일된 서식에 제출서류를 작성하기 바람

# 결산검사 수범사례

## □ 수범사례

○ 관리번호 : 1

○ 제 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현 황

□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계	2014년	과년도	비 고
합 계	2,334,713	1,127,043	1,207,670	
주민세	108,290	34,634	73,656	
재산세	859,132	384,360	474,772	
자동차세	857,887	385,902	471,985	
지방소득세	493,087	322,147	170,940	
폐지 도시계획세	9,591		9,591	
폐지 사업소세	5,151		5,151	
폐지 종합토지세	1,575		1,575	

□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계	2014년	과년도	비 고
합 계	2,831,874	500,599	2,331,275	
문화관광과	11,286	10,647	639	
종합민원실	743,162	42,037	701,125	
환경위생과	55,804	14,776	41,028	
안전건설과	81,497	58,899	22,598	
도시주택과	1,603,303	169,286	1,434,017	
농업기술센터	336,822	204,954	131,868	

-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2012년도 590,472,580원, 2013년도 871,078,910원 2014년도 821,888,950원 등 3년 연속 5억 이상을 징수하여
- 이월미수액을 2012년도 2,787,422,370원에서 2013년도 2,463,740,320원으로 2014년도 2,334,719,840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하기 바람
-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여 기관표창을 받음.

## □ 검사자 의견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됨으로 재무과 및 전 실과소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길 바람.